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	재무과	1

(2014. 4. 21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이 진 표]

1. 안 건 명

○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출일자 : 2014년 4월 11일

○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○ 2014년 4월 16일

4. 관련근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5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, 중요재산 취득·설치대상인 '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'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6. 주요내용

○ 교육인프라 인 대표 도서관의 절대 부족

-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는 21위에 불과

  (마포중앙도서관 신축 경우에도 9위에 해당)

- 우리구 제일 큰 구립서강도서관도 서울시의 작은 도서관 기준 1,650㎡에 미달하는 1,134㎡에 불과한 실정

○ 공공교육시설 부족으로 우리구 청소년들의 교육욕구 미충족

- 관내 시립청소년수련관 1개소,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 등으로 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인프라 절대 부족

- 2012년 타자치구로의 전출학생 규모는 상위 수준으로 25개구에서 초등생은 1위, 중등생은 3위로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전출 증가

  ※ 2012년도 초등생 전출 : 서울시 전체 651명 중 198명(30%)

○ 우리구 소유부지에 시설비만 투입되므로 최소한 재원이 투입되며, 문화교육단지화로 지역발전 활성화 예상

- 구유지로 서울시에 임대 중이나 금년 6월말 임대기간 만료됨

- 부지 반경 1.5km 내 13개 학교(초7, 중4, 고2)가 위치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시설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임

- 부지내 건물(舊 의회)에 2013. 7. 1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유치, 장래 교육문화단지로 조성을 위한 입지 여건 구비

○ 시설건립 소요액 30%에 해당하는 130억원을 한국중부발전(주)에서 지정기탁한 재원으로 확보함으로써, 구 재정운용 부담이 경감됨

7. 검토결과

○ 동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, 중요재산 취득·설치대상인 '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' 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
○ 주된 내용은 구(舊)마포구청사의 건물 중 본관 건물(지하1층, 지상5층, 연면적 7,207.2㎡)을 철거한 후, 동일 부지내에 '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'(지하2층, 지상6층, 연면적 15,814㎡)를 건립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비교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표도서관을 확충하고, 청소년 교육센터를 통해 구민의 교육 환경 개선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2014. 3.21 안전행정부의 중앙지방재정투·융자심사 결과가 회신됨에 따라 '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' 건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나,

심사결과, 1)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인 수익시설 유치방안 강구, 2)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후 지원 곤란 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축소, 3)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 하라는 조건이 있었으므로,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

○ 총사업비가 40,376백만원(국비 5,335백만원, 시비 11,354백만원, 구비 10,687백만원, 발전소지원금 13,000백만원)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,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에 도출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등 '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' 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관계법령 및 근거

[지방자치법]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2. 예산의 심의·확정
3. 결산의 승인
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5. 기금의 설치·운용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
8. ~10.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36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 ·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
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]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2.4>

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]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계획

1. 사업개요

소재지	지목	토 지	건 물		건축비	토 지 소유자
		공부면적	규모	용도		
마포구 성산로 128	대지	13,434㎡	계 : 15,814㎡		40,376 백만원	마포구
			지하1층:4,200㎡	사무실, 부설주차장		
			지하2층:4,200㎡	사무실, 공영주차장		
			지상1층:1,250㎡	청소년카페, 강당, 방과후 돌봄 센터 등		
			지상2층:1,250㎡	교육비전센터		
			지상3층:1,250㎡	영어체험센터, 사무실 등		
			지상4층:1,222㎡	도서관		
			지상5층:1,222㎡			
			지상6층:1,220㎡			

○ **총사업비 : 40,376백만원**

▶ 국비 5,335/ 시비 11,354/ 구비 10,687/ 발전소지원금 13,000

2.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총사업비	연 도 별 투 자 계 획				비 고
			2014	2015	2016	2017	
계		40,376	8,000	14,124	9,124	9,128	
국 비		5,335		1,778	1,778	1,779	도서관 건립비의 40%
시 비		11,354		3,784	3,784	3,786	
시비	도서관보조금	1,078		359	359	360	500평 이내 도서관 건립비 보조
	주차장(특)	1,933		644	644	645	건립비 보조
	특별교부금	8,343		2,781	2,781	2,781	특별재정 수요 지원
구 비		10,687		3,562	3,562	3,563	
구비	일반회계	7,612		2,537	2,537	2,538	중기재정계획 반영
	주차장(특)	3,075		1,025	1,025	1,025	
발전소지원금		13,000	8,000	5,000			지정기탁금

3 법적 근거

- ○ 지방자치법(법률 제12280호, 2014.1.21) 제39조
- ○ 지방자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4859호, 2013.11.20) 제36조
- 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법률 제12201호, 2014.1.7) 제10조
- 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5279호, 2014.3.24) 제7조

4. 향후 추진계획

구 분	계획일정	비 고
공유재산심의회 심의	2014. 4월	
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의회 심의요청	2014. 4월	
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	2014. 4월	
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자문단 자문회의 개최	2014. 4월 ~ 계속	
설계경기 공모	2014. 5월 ~ 7월	
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	2014. 8월 ~ 12월	
공사발주 및 착공	2015. 1월	
공사완료	2017. 12월	

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부지 현황사진

▣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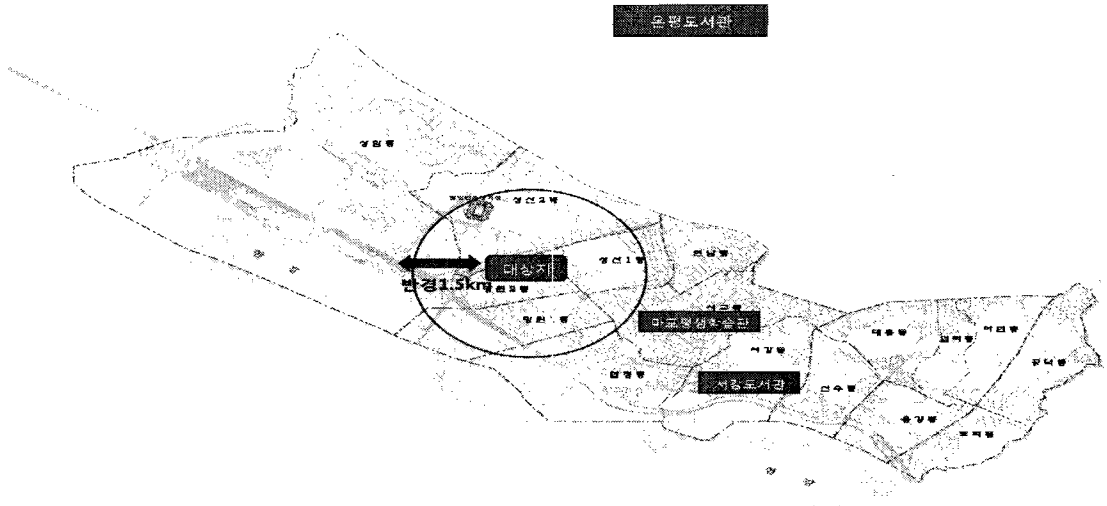

▣ 현황사진

[별지 제11호 서식]

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

2014년도 관리계획총괄표(11-1)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	상반기			하반기			합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1	1	40,376,000				1	1	40,376,000	
	1. 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2. 교환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 기타취득	토지 건물 기타	1	1	40,376,000				1	1	40,376,000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4. 매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5. 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 교환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2014년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(11-2)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비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
001	건물	마포구 성산로 128 (구 마포구청사)	1 (15,814㎡)	40,376,000 (건축비)	2014. 5월 ~ 2017. 12월	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으로 인한 취득	